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11월 13일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2009년 11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7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2009. 12. 17)
상정 및 의결

2. 제안설명

(제안 설명자 : 청소과장 김태산)

□ 제안이유

-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590호, 2009. 6. 30. 공포·2009. 7. 1. 시행)되면서 1회용품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숙박업이 제외되어 이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 하는 한편,
- 신고포상금에 목적을 둔 전문신고자의 의도적 위반사례의 증가로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제명을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안 제명)
- 나.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을 삭제함. (안 제7조,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별표)
- 다.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숙박업을 제외함.(안 별표)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문	답 변
○조례개정안중 숙박업이 제외된 중요사항은 무엇인가?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공문이 시달되어 개정하고자함.
○위반업소 신고포상금과 과태료를 하향조정 한 사유는?	○위반과태료중 이의신청이 없이 납부하는 위반자에게는 과태료중 50%에서 20%를 감면해 주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은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삭제하는 내용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
례”로 한다.

제1장·제2장·제3장 및 제4장을 각각 삭제한다.

제1조 중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
4조에 따라”로 하고, “과태료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과태료 부과·징수”로 한다.

제3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10일이상”을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당해”를 “해
당”으로 하며,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의거”를 “따
라”로 하며,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0일이내”
를 “30일 이내”로 하며, “45일이내”를 “45일 이내”로 하고, “10일이내”
를 “10일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

른”으로 하고,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30일이내”를 “30일 이내”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를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적발된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아니하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11호서식에 따라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20퍼센트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제9조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33제 공급미터미만”을 “33제공급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9조(과태료부과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 중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부과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과태료부과기준(제2조 관련)

(단위 : 만원)

과 태 료			
부 과 대 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1.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경우			
가.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평상시 1회 1,0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나.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평상시 1회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다.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평상시 1회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라.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평상시 1회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5	10	30
2. 목욕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가. 사업장 총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목욕장	50	100	200
나. 영업장 총 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의 목욕장	30	50	100
다. <삭 제>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경우	100	200	300
4.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 10제곱미터 이상의 재활용제품 교환·판매매장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100	200	300

5.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경우			
가. 매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0	50	100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30	50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	10	30
6.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대규모점포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합성용기를 사용한 경우			
가.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30	50	100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10	30	50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	10	30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운영업, 공연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경우			
가. 매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	10	30
8.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50	100	200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처분통지서

제 호
수 신
제 목: 과태료 처분통지

- 귀하께서 다음과 같이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나. 위반내용:
-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원의 과
태료를 부과하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
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임: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① 성 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④ 부 과 기 준		⑥ 납부통지서 번호	
	⑤ 고지받은 일자		⑦ 과태료 금액	
	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천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발 신 부천시장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이의제자	① 성 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고지일자		⑥ 과태료금액	
	⑤ 부과기간		⑦ 이의제기일자	

붙임: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별지 제11호 서식]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갑)

(처분기관 보관용)

<u>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u>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원			~	
위반행위	일시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을)

(피처분자 통지용)

<u>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u>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원			~	
위반행위	일시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p>※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2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p>					
<p>부 천 시 장 인</p>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원		~		
세입자계좌번호					
<p>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p> <p>년 월 일</p> <p>수납은행 :</p>					
수납일자도장			부 천 시 장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정)

(개인 통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원		~		
<p>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p> <p>년 월 일</p> <p>수납은행 :</p>					
수납일자도장			취 급 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무)

(처분기관 통보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원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천시장 귀하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532호
의결 년월일	2009. 12. 23. (제157회)

제출년월일 : 2009. 11. 16.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590호, 2009. 6. 30. 공포·2009. 7. 1. 시행)되면서 1회용품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숙박업이 제외되어 이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 하는 한편,
- 신고포상금에 목적을 둔 전문신고자의 의도적 위반사례의 증가로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제명을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안 제명)

나.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을 삭제함. (안 제7조,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별표)

다.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숙박업을 제외함.(안 별표)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
례”로 한다.

제1장·제2장·제3장 및 제4장을 각각 삭제한다.

제1조 중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
4조에 따라”로 하고, “과태료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과태료 부과·징수”로 한다.

제3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10일이상”을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당해”를 “해
당”으로 하며,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의거”를 “따
라”로 하며,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0일이내”
를 “30일 이내”로 하며, “45일이내”를 “45일 이내”로 하고, “10일이내”
를 “10일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

른”으로 하고,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30일이내”를 “30일 이내”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의 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를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적발된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아니하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11호서식에 따라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20퍼센트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제9조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33제 공급미터미만”을 “33제공급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9조(과태료부과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 중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부과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과태료부과기준(제2조 관련)

(단위 : 만원)

과 태 료			
부 과 대 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1.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경우			
가.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평상시 1회 1,0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나.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평상시 1회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다.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평상시 1회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라.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평상시 1회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5	10	30
2. 목욕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가. 사업장 총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목욕장	50	100	200
나. 영업장 총 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의 목욕장	30	50	100
다. <삭 제>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경우	100	200	300
4.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 10제곱미터 이상의 재활용제품 교환·판매매장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100	200	300

5.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경우			
가. 매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0	50	100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30	50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	10	30
6.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대규모점포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합성용기를 사용한 경우			
가.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30	50	100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10	30	50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	10	30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운영업, 공연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경우			
가. 매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	10	30
8.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50	100	200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처분통지서

제 호
수 신
제 목: 과태료 처분통지

- 귀하께서 다음과 같이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나. 위반내용:
-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원의 과
태료를 부과하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
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임: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① 성 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④ 부 과 기 준		⑥ 납부통지서 번호	
	⑤ 고지받은 일자		⑦ 과태료 금액	
	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천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발 신 부천시장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이의제자	① 성 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고지일자		⑥ 과태료금액	
	⑤ 부과기간		⑦ 이의제기일자	

붙임: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별지 제11호 서식]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갑)

(처분기관 보관용)

<u>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u>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원			~	
위반행위	일시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을)

(피처분자 통지용)

<u>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u>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원			~	
위반행위	일시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p>※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2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p>					
<p>부 천 시 장 인</p>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원		~		
세입자계좌번호					
<p>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p> <p>년 월 일</p> <p>수납은행 :</p>					
수납일자도장			부 천 시 장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정)

(개인 통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원		~		
<p>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p> <p>년 월 일</p> <p>수납은행 :</p>					
수납일자도장			취 급 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무)

(처분기관 통보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원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천시장 귀하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1장 총 칙</u></p>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u>같은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u>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u>과태료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u>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제2장 과태료의 징수</u></p> <p>제3조 (의견진술)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u>규정에 의하여</u>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u>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u>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u>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제1조(목적) ----- ----- ----- -- <u>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u> ----- ----- -----<u>과태료부과·징수</u> ----- -----.</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제3조(의견진술) ----- -----<u>에 따라</u> ----- -----<u>10일 이상</u> ----- ----- ----- ----- ----- -----.</p>

현행	개정안
<p>제5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u>30일 이내</u>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에 <u>의하여</u>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u>규정에 의한</u>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통보서에 <u>의하여</u>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p> <p>① ----- ----- ----- <u>30일 이내</u> ----- ----- ----- <u>따라</u> ----- -----.</p> <p>② ---<u>에 따른</u> ----- ----- ----- ----- --<u>따라</u>----- ----- -----.</p>
<p>제6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u>의하여</u>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제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 ----- ----- ----- <u>따라</u> ----- -----.</p>
<p><u>제3장 신고포상금 지급</u></p>	<p><삭 제></p>
<p>제7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회 <u>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u></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제8조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② (생략)</p> <p>③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아니하고 소정의 납부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부과한다.</p>	<p>제8조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적발된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아니하고 소정의 납부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11호서식에 따라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20퍼센트를 감액하여 부과한다.</p>
<p>제9조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생략)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p>제9조(과태료부과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제36조제1항에 따른 ----- ----- 제2조제12호의 ----- ----- 2. (현행과 같음) 3. -----33제곱미터 미만----- ----- -----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 (신고자) ①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p> <p>②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p>	<p><삭 제></p>
<p>제11조 (신고방법) ①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행위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 테이프 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접수및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제12조 (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시장은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p>	<p><삭 제></p>
<p>제13조 (신고서 처리 등) ①시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중복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부터 3일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1회용품사용규제위반행위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 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시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액된과태료처분및납부필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정해진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전산고지방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④시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p> <p>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10호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p> <p>⑥시장은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되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처분및납부필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정해진 포상금을 지급한다.</p> <p>⑦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⑧제7항의 피신고자 이의신청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제14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②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이내에 지급한다.</p>	<p><삭 제></p>
<p>제15조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p> <p>①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9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전국을 기준으로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p><삭 제></p>

현행	개정안
<p>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p> <p>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p> <p>②신고포상금은 당해연도의 예산 범위안에서 지급한다.</p> <p>③시장은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u>제4장 보칙</u></p>	<p><u><삭 제></u></p>
<p>제16조 (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u><삭 제></u></p>
<p>제17조 (운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u>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u>을 준용한다.</p>	<p>제17조(운용규정) ----- ----- ----- 「<u>국고금관리법</u> 시행규칙」-----.</p>

<관계 법령발췌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업종 및 준수사항) ① 법 제10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그 밖의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8.6>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4. 「공중위생 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5.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도·소매업(제5호에 따른 업종 및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② 제1항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업종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 및 세부 준수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 및 세부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4.7]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